옥 천 군

선람	기관의 장

군 보

http://www.oc.go.kr

제1304호 2023. 4. 20.(목)

【조 례】

○옥천군 조례 제3158호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
○옥천군 조례 제315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3
○옥천군 조례 제3160호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15
○옥천군 조례 제3161호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21
○옥천군 조례 제3162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4
○옥천군 조례 제3163호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26
○옥천군 조례 제3164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31
○옥천군 조례 제3165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7
○옥천군 조례 제3166호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43
○옥천군 조례 제3167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46

【고 시】

○옥천군 고시 제2023-48호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결정고시...50

【공 고】

○옥천군 공고 제2023-582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54
○옥천군 공고 제2023-583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66

회람									

발행: 옥천군 편집: 기획감사실(☎730-3063)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158호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을 “개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률고문은 <u>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u> 중인 변호사 중 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이 있는 사람 ②・③ (생　략)	제2조(위촉) ① ---. 1. (현행과 같음) 2. -------- <u>개업</u> -- ②・③ (현행과 같음)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㉑

옥천군조례 제3159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을 도모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구감소 대응 정책사업

제4조(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2.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
3.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ㆍ관광 등 지역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4.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5.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전입장려 지원
6. 인구감소 공동대응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계협력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환수조치 및 지원의 중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3장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장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수 또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지역 맞춤형 시책 추진

제1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표창) 군수는 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마련과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의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출산축하금 만큼을 공제한 출산육아수당을 지원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축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로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위원 임기 경과조치) 이 조례 시

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옥천군인구늘리기민·관협의체」 위원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옥천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 중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칙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별표〕

인구정책사업 지원 세부기준(제4조제2항관련)

구분	사업명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비고
출산 장려 지원	출산육아 수당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세부사항은「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만원	옥천 사랑 상품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나.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내용**: 출생아 당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신생아 ○ **지원기준**: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기준과 동일 ○ **지원내용**: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세부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준하고, ‘서비스 가격’ 기준은 단축형 또는 표준형으로 적용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임신 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 ○ **지원내용**: 엽산제 1회 2개월분(최대 2회/년) [산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 ○ **지원내용**: 종합영양제 1회 2개월분 ※ 단, 산모의 영양상태에 따라 최대 4개월분까지 지원 가능	

<table>
<tr><th>구분</th><th>사업명</th><th>지원요건 및 지원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6">전입
장려
지원</td><td>전입
축하금</td><td>[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사람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단,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인 자는 타 지역 1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학생 추가장려금]
○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학생
○ 지원기준: 학생이 전입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장려금 지급
※ 3년 한정 지급
○ 지원내용: 매년 10만원</td><td>옥천
사랑
상품권</td></tr>
<tr><td>문화시설
관람료
할인</td><td>○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사람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
○ 지원내용: 1년간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50%할인</td><td></td></tr>
<tr><td>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td><td>○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20리터 봉투 50매</td><td></td></tr>
<tr><td>교통비
지원</td><td>○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10만원 교통카드</td><td></td></tr>
<tr><td>국적 취득
축하금</td><td>○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 지원기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옥천군으로 둔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지원내용: 50만원
※ 전입축하금과 중복지원 가능. 1회 한정 지급</td><td>옥천
사랑
상품권</td></tr>
<tr><td>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td><td>○ 지원대상: 군에 전입한 관내대학교 학생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
나. 관내대학 전입축하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유지 시
○ 지원내용: 100만원 이내(2회 분할)
- 1회차: 관내대학 재·휴학중이면서 전입신고 시 50만원
- 2회차: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50만원
※ 동일인에 대하여 1회만 지급. 회차별 별도 신청</td><td>옥천
사랑
상품권</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사업명</th><th>지원요건 및 지원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지역
정착
지원</td><td>결혼
정착금</td><td>○ 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지원기준: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
나.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 유지 시
※ 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 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전 혼인관계로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두 사람 모두 결혼정착금 혜택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두 사람 중 한 명만 결혼정착금 혜택 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액 지급
○ 지원내용: 500만원 이내(2회 분할)
- 1회차: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동일인에 한하여 1회만 지급. 회차별 별도 신청</td><td></td></tr>
<tr><td>초등학교
입학축하금</td><td>○ 지원대상: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가정
○ 지원기준: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단,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거주하는 학생도 해당
○ 지원내용: 입학생 1명당 20만원</td><td></td></tr>
</table>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

옥천군조례 제3160호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7.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행사에 필요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구조물,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2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① 군수는 제5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 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주최자 준수사항 권고) 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10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161호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옥천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 및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안전문화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둔다.

② 안전보안관 대표와 부대표는 각 1명을 두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162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활 지원금(유가증권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

옥천군조례 제3163호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준비 및 신청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3.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4.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5.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6. 운영인력 보유 및 배치
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
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법인·단체에 제4조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책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노동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
2. 외국인 계절노동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164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정책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 정책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정책의 검토·검증에 관한 사항
3.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미래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현직 관계자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다. 시민·사회 단체 등에 소속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정 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일반행정·교육
2. 문화관광·체육
3. 보건·복지
4. 경제·농업·환경
5. 안전·건설·교통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소관 분야의 전문

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장이 편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 분과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분과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관련 사회 단체·법인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지역 주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분과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해당 분야의 담당관, 과·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0조(특별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1.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경우
2. 특정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경우
3. 특정 사업 또는 정책 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군수는 의견수렴 및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분과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종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특별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특별분과위원회”

로, “분과위원”은 “특별분과위원”으로, “분과위원장”은 “특별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제12조(간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모든 위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이 아닌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의견 청취)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각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165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지방재정법」제17조”를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단독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를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용어의 뜻은「도시가스사업법」 및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용어의 뜻

은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단독주택 세대용)

<table>
<tr><td colspan="5" align="center">보조금 교부 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 align="right">(전화 :　　　　　　)</td></tr>
<tr><td colspan="2">공급장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완성검사일</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보조금 신청액</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신청내역</td><td colspan="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인입배관 분담금</td></tr>
<tr><td colspan="5">「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colspan="3">1.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1부.
3.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1부.</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옥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삭 제>

5. “단독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에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도시가스사업법」 및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 용어의 뜻은 「도시가스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5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을 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보조금의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①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인입배관 분담금 납부확인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166호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육묘판,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반사필름, 폐차광막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회, 환경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개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각 마을·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
3. 영농폐기물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운영)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회 의결을 얻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인)

옥천군조례 제3167호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포상 할 수 있으며, 추후 입찰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배점(총점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 고
100	30	40	30	

별표 2의 탁월의 적용의 계약 시란 및 같은 표 우수의 적용의 계약 시란

중 “입찰참여시 가점 부여”를 각각 “-”로 하고, 같은 표 적용방법의 제1 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행실적 평가기준(제8조 관련)

가. 평가방법 :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총 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 고
100	30	40	30	

[별표 2]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제12조 관련)

등 급	평가점수	적 용	
		대행기간 중	계약 시
탁 월	90점 이상	표창	-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부 진	60점 미만	관리감독 강화, 계약해지	입찰제한 1회

옥천군 고시 제2023-48호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결정고시

제30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제3848호 (2023.4.12.)로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함.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총 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650,527,421	615,197,887	35,329,534	5.74%
일 반 회 계	574,026,598	542,052,539	31,974,059	5.90%
특 별 회 계	76,500,823	73,145,348	3,355,475	4.59%
공기업 특별회계	49,266,833	47,655,150	1,611,683	3.38%
ㅇ 수도사업공기업	14,349,375	14,147,022	202,353	1.43%
ㅇ 하수도사업공기업	34,917,458	33,508,128	1,409,330	4.21%
기타 특별회계	27,233,990	25,490,198	1,743,792	6.84%
ㅇ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3,234	101,082	2,152	2.13%
ㅇ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437,771	147,292	290,479	197.21%
ㅇ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370	209,970	△8,600	△4.10%
ㅇ 수질개선특별회계	20,246,510	20,205,124	41,386	0.20%
ㅇ 주차장특별회계	6,245,105	4,826,730	1,418,375	29.39%

2. 일 반 회 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세입	합 계		574,026,598	542,052,539	31,974,059
	지 방 세		41,492,538	41,492,538	-
	세 외 수 입		18,225,418	16,413,990	1,811,428
		경상적세외수입	7,422,076	7,327,657	94,419
		임시적세외수입	10,463,592	8,746,583	1,717,009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339,750	339,750	-
	지 방 교 부 세		283,864,000	265,400,000	18,464,000
	조 정 교 부 금 등		24,797,740	24,597,740	200,000
	보 조 금		179,146,559	167,435,771	11,710,788
		국고보조금 등	135,007,177	128,257,165	6,750,012
		시 · 도비보조금	44,139,382	39,178,606	4,960,776
	지 방 채		1,000,000	1,000,0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500,343	25,712,500	△212,157
세출	합 계		574,026,598	542,052,539	31,974,059
	일 반 공 공 행 정		50,241,813	49,099,544	1,142,269
	공공질서 및 안 전		26,900,597	24,255,497	2,645,100
	교 육		3,777,263	3,696,832	80,431
	문 화 및 관 광		50,147,589	44,095,290	6,052,299
	환 경		33,475,622	32,393,184	1,082,438
	사 회 복 지		138,306,721	134,485,799	3,820,922
	보 건		14,749,303	13,947,729	801,574
	농 림 해 양 수 산		90,619,731	87,908,146	2,711,585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20,763,845	14,113,134	6,650,711
	교 통 및 물 류		28,152,784	25,026,484	3,126,300
	국토 및 지역개발		40,175,050	34,816,544	5,358,506
	예 비 비		8,448,755	9,924,184	△1,475,429
	기 타		68,267,525	68,290,172	△22,647

3.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과목 \ 구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수입	합 계	49,266,833	47,655,150	1,611,683
	사 업 수 입	16,390,321	15,873,984	516,337
	자 본 적 수 입	32,876,512	31,781,166	1,095,346
지출	합 계	49,266,833	47,655,150	1,611,683
	사 업 비 용	15,331,545	14,364,317	967,228
	자 본 적 지 출	33,935,288	33,290,833	644,455

4.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세입	합 계		27,233,990	25,490,198	1,743,792
	지 방 세		-	-	-
	세 외 수 입		273,623	273,623	-
		경상적세외수입	130,623	130,623	-
		임시적세외수입	20,000	20,000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123,000	123,000	-
	지 방 교 부 세		-	-	-
	조 정 교 부 금 등		-	-	-
	보 조 금		21,046,555	21,079,555	△33,000
		국고보조금 등	19,969,121	20,002,121	△33,000
		시 · 도비보조금	1,077,434	1,077,434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13,812	4,137,020	1,776,792
세출	합 계		27,233,990	25,490,198	1,743,792
	환 경		20,246,510	20,205,124	41,386
	사 회 복 지		201,370	209,970	△8,600
	농 림 해 양 수 산		-	-	-
	교 통 및 물 류		6,245,105	4,826,730	1,418,375
	국토 및 지역개발		541,005	248,374	292,631
	기 타		-	-	-

옥천군 공고 제2023-582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를 구착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5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안 제16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

4. 제정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환경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43, FAX : (043)731-2914

※ 전자우편(이메일) : surisuri93@korea.kr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조례 제정 입법계획 수립안

1. **조 례 명**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안 제5조)

 ○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 화학물질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5조)

 ○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안 제16조)

 ○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

4. **제정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

5. **제정조례안** : 붙임

6. **관계법령발췌** : 붙임

7.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붙임

8.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대상**

 ○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법 제 심 사 : 심사대상

 ○ 규 제 심 사 : 심사대상

 ○ 부패영향 평가 : 평가대상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평가대상

 ○ 아동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 입 법 예 고 : 20일 실시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붙임(표준조례안 첨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충청북도 및 금강유역환경청, 관할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비상대응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옥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옥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 소속 공무원
4. 금강유역환경청, 청주고용노동지청 및 옥천교육지원청의 담당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별지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옥천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군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하여야 하

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청

주고용노동지청·옥천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②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향후 3년 동안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임기: ~)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옥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사임한 이후에도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의　　견

옥천군 공고 제2023-583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옥천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옥천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92,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촉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옥천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3.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 및 조직의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업취약계층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취업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 지원

2. 구인·구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지역 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복교육과장, 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일자리사업 등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자리 업무 담당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의　　견